

**2021년도 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」 종합 금융지원
신규 대상 기업 선정 공고**

‘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’의 2021년도 신규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3월 15일
특허청장

1. 사업목적

- 다양한 산업부문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혁신성·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성장단계·자금수요에 맞게 종합적·적극적 금융 지원

2. 지원분야

- 「혁신성장 공동기준*」에 따라 9개 테마(46개 세부분야), 306개 품목
* 자세한 사항은 [별첨1] 2021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리스트 참고

3. 관련법령

- 중소기업기본법 제18조의2(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),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1조(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), 제18조(세계적 유망기업 육성),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(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)

4. 지원내용

-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혁신성·기술성을 감안한 정책금융 기관의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
- 혁신기업의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·보증·투자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한도 확대, 우대금리 등 금융지원상 혜택도 부여
- 금융지원 외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
- * 세부 지원프로그램은 [별첨2]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안내문 참조

5. 신청자격 등

□ 신청자격 ※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

- 중견¹⁾·중소기업²⁾ 중 「혁신성장 공동기준」에 따른 306개 품목을 취급*하며,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를 충족하는 기업
 - 1) '중견기업'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호의 기업임
 - 2) '중소기업'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임
- 특허청으로부터 다음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
 - ① 글로벌 IP스타기업, ② IP R&D 전략지원 기업, ③ IP제품혁신(舊 지식재산 활용전략) 지원 기업, ④ IP 가치평가 지원 기업

< 「혁신성장 공동기준」 적용 방법 >

1. 회사 영위사업(또는 보유기술) 중 특정사업(또는 기술)이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과 부합하면 적용 가능
2. 전방산업(도·소매, 운송 등은 제외), 후방산업(범용성 부품 등은 제외)도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적용 가능
 - (연관성의 원칙) 기업의 사업분야, 보유기술 또는 제품이 공동기준 품목과 직·간접적으로 연관*되어야 함
 - * 직접적 연관 - 품목의 설명과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
 - 간접적 연관 - 품목의 전·후방 산업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
 - (차별성의 원칙) 연관성과 함께 기업의 사업분야, 보유기술 또는 제품이 가지는 차별성*이 설명되어야 함
 - * 차별성 - 범용성 제품·부품이나 도·소매와 같은 단순 사업형태가 지양되어야 함을 의미하며,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성, 기술 또는 제품의 우수성 등을 포함
3. 품목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R&D 실적(특허 출원, 정부인증 등)을 바탕으로 실용화 단계에 있을 경우 적용 가능
 - (가능성의 원칙) 기업의 사업분야, 보유기술 또는 제품의 상용화 가능성을 설명해야 함
 - * 제조업의 경우 R&D를 통한 양산준비단계에 있어야 하며, 제약·바이오 업종의 경우 특허를 취득하고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했거나 전임상시험에 진입한 경우 실용화단계라고 볼 수 있음

□ 지원제외

-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,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,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
-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기자본 전액 잠식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경영자 평판(횡령, 배임 등)의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언론보도,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은 경우
- 수년간 연속으로 대규모 적자 지속, 매출 정체 등으로 계속기업으로의 존속여부가 불확실한 경우

6. 선정방법

□ 평가방법

- (요건심사) 제출서류, 신청자격 등 검토
- (서면평가) 지식재산권 역량, 연구개발 역량, 향후 성장 가능성 등 평가
 -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은 “선정가능과제”로 하며, 70점 미만인 기업은 “선정제외”로 분류함. 단,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

< 평가항목 및 배점 >

구분	평가항목	평가 고려사항	배점
보유 기술 혁신성 (50)	1) 지식재산권 역량	① 지식재산권 보유현황(출원, 등록, 해외출원, 해외등록) ② 지식재산권 담당 조직 및 인력 현황 ③ 독보적 특허선진기술 확보(보유 혹은 미래 확보 기술의 독보성(모방 난이도), 제품화 시 시장지배력) ④ 향후 핵심특허·기술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	30
	2) 연구개발 역량	① 기술개발조직 및 개발인력의 우수성 ②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 현황	20
향후 성장 가능성 (50)	3) 기업 성장 추이	① 최근 3년간 매출액, 수출액, 영업이익률 등의 증가 여부	20
	4) 최근 투자실적과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	① 최근 3년간 투자실적과 향후 투자 전략 ②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확보 계획의 치밀성 및 타당성 ③ 인력, 시설, 장비, 네트워크 등 필요 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④ 자금 수요(대출, 보증, 투자) 및 시급성	15
	5) 핵심인재 확보 및 인재육성 적극성	① 최근 3년간 고용 현황 ②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③ 핵심인재의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	15
합계			100

7. 신청방법

□ 신청방법

구분	내용
접수기간	■ 2021. 3. 15 (월) 09시 ~ 2021. 3. 26 (금) 17시
접수처	■ ipbase@kipo.org 로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송부 * <u>접수 마감일 17:00 이후 접수 불가함</u> * <u>접수 후 접수결과 안내메일 회신 예정. 회신을 못 받는 경우에는 확인 전화 필요 (02-3459-2827)</u>
서식교부	■ 공고일부더 서식 교부 및 접수 - 특허청 홈페이지(www.kipo.go.kr)
접수절차	■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, 접수메일(ipbase@kipo.org)로 송부 * 혁신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고, 나머지 서류는 스캔본 혹은 PDF 파일로 제출 *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압축하여(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) 1개 파일 발송(파일명은 기업명으로 기재)

유의사항	① 접수 마감일 17:00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 ② 신청서에 기입한 담당자 E-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, 결과발표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③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④ 제출서류는 비공개로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 제출된 서류 등의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-----	---

□ 제출서류

구분	번호	제출서류	수량
공통 서류	①	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신청서	1부
	②	혁신성장전략서	1부
	③	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	1부
	④	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	1부
	⑤	최근 3개년도('17~'19)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※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'표준재무제표증명' 또는 '재무제표 확인' 페이지를 포함 제출	1부
	⑥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(법인명으로 출력)	1부

*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제출(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)

8. 기타 유의사항

-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최종선정 후 선정된 기업 명단은 대외 공개 원칙
- 선정된 기업의 혁신성, 경영실태 등을 매년 재점검할 예정이며, 미흡한 기업은 혁신기업에서 제외
- 선정 후 금융지원 신청 시 금융기관별 별도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, 심사 통과 시에 금융지원을 실행하고 심사 미통과시 기업이 원하는 경우 비금융지원 (예: 컨설팅) 연계 가능

9. 문의처

-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(02-3459-2827, ipbase@kipa.org)

[서식 1]

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신청서

업 체 명	(주)00	사 업 자 번 호 (법인등록번호)	000-00-00000 (000000-0000000)
기 업 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중견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	대 표 자	
주 요 제 품 또는 서비스 (매출비중)	1. (%) 2. (%) 3. (%)	한 국 표 준 산 업 분 류 코 드	자동차 차체용 신품부품제조업 (C00000)
혁신성장 공동 기준 영위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코드번호 : ▪ 테마 : ▪ 분야 : ▪ 품목 : <p style="font-size: small; margin-top: 5px;">* 적용가능한 품목이 복수일 경우는 기업의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동일한 비중일 경우에는 어느 품목을 적용해도 상관 없음(작성 후 삭제)</p>		
금 용 수 요 (중복체크가능)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출 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증	자금 수요 시기	(예) 21년 3월, 21년 하반기, 22년 상반기 등
담 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름(직책) : ▪ 회사번호 : ▪ 휴대전화 : ▪ 이메일 : 		
<p>본 확인서의 작성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함을 확인하며, 만약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평가에서 배제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21 년 월 일</p> <p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margin-top: 10px;"> 기업명 : 대표자 : (인) </p>			

* 법인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스캔본 및 한글파일 송부

3) 재무현황

매출구성 (단위 : 억원)

연 도		2017년	2018년	2019년
매 출 액(A)				
내 수				
수출	직수출(B)			
	기 타			
직수출 비중(B/A)				

※ 최근 3년간 직수출 증가율 : ()%

신용평가등급

연 도	2017년	2018년	2019년
신용등급			

* 신용평가기관 : ()

영업이익률 (단위 : 억원)

연 도	2017년	2018년	2019년
매 출 액(A)			
영업이익(B)			
영업이익률(B/A)			

이자보상배율 (단위 : 억원)

연 도	2017년	2018년	2019년
영업이익(A)			
금융비용(B)			
이자보상배율(A/B)			

부채비율 (단위 : 억원, %)

연 도	2017년	2018년	2019년
부채(A)			
자기자본(B)			
부채비율(A/B)			

유동비율 (단위 : 억원, %)

연 도	2017년	2018년	2019년
유동부채(A)			
유동자산(B)			
유동비율(B/A)			

1) 기업규모(개별기준)

- 증가율은 최근 3년('17~'19년)간 CAGR 값

* CAGR(Compound Annual Growth Rate)은 여러해 동안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것으로 매년의 성장률을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한 값

: '17~'19년 3년간 연평균 성장률 = $(2019년도\ 값 / 2017년도\ 값)^{(1/2)} - 1$

- 주요거래처 : '19년 기준 매출 비중 상위를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명과 매출 비중을 기재

* 비율의 합은 100%가 되도록 작성하며 상위 3개 거래처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

2) 연구개발 역량

- 우수기술연구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수기술연구센터(ATC)등 정부 인증 우수연구소에 한함

-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(제42조)에 의해 신고한 조직에 한함

- 기술개발인력은 연구소 또는 전담조직에 속한 인력

- 상시근로자수 : 상시 근로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

1. 임원 및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

2.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

3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

4.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(이하 "단시간근로자"라 한다)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(所定)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

*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)를 통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파악

- 「혁신성장 공동기준」 해당 품목 : '별표1. 「2021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리스트」'를 참고하여 적용 가능한 품목 작성(적용 가능한 품목이 복수일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, 동일한 비중일 경우 택 1)

3) 재무현황

-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 수출(내국신용장,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)로 구분하여 작성

*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(www.kita.net)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·증명

** 내국신용장,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확인

- 3년 평균 직수출증가율 = $(19년\ 직수출액 / 17년\ 직수출액)^{(1/2)} - 1$

- 신용평가등급 : 신용평가등급 및 신용평가기관 명기

*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지 않은 경우, 국책금융기관 또는 시중은행 평가신용등급 활용 가능

- 영업이익률(%) = 영업이익/매출액 x 100

- 이자보상배율 = 영업이익/금융비용

- 부채비율(%) = 부채/자기자본 x 100

- 유동비율(%) = 유동자산/유동부채 x 100

혁신성장전략서

비 전

최종 목표

연도별 목표치

2020

2021

2022

2023

2024

2025

총 매출액

제
품
mix

○○제품

○○제품

○○제품

수
출

직수출액

기타

세계시장점유율

인력 확보

기술확보 현황 및 향후 주요전략

- * 현재 보유 기술의 우수성,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, 기술개발 인프라 현황, 향후 미래 기술 확보 계획, 인프라 확충 계획,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, 기대효과 등
- * 반드시 혁신성장 공동기준 306개 품목과 연관지어 작성(별표1. 「2021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리스트」 참고)

혁신성장전략서

기술 확보 현황 및 향후 주요 전략

- * 현재 보유 기술의 우수성,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, 기술개발 인프라 현황, 향후 미래 기술 확보 계획, 인프라 확충 계획, 기술 확보 리스크 대응방안, 기대효과 등
- * 반드시 혁신성장 공동기준 306개 품목과 연관지어 작성(별표1. 「2021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리스트」 참고)

* 2페이지반 이내로 작성

혁신성장전략서

투자 현황 및 향후 주요전략

* 최근 3년 투자 현황, 투자 여건 분석, 투자 로드맵, 투자 재원확보 방안, 기대효과 등

** 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」 금융 지원 수요 시기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

주요 투자 내역	연도별 투자금액 (단위 : 억원)			
	2017	2018	2019	증가율(CAGR)
총 투자액(A)				%
매출액(B)				%
매출액 대비 투자비중(A/B*100)				

* 2페이지 이내로 작성

혁신성장전략서

경영혁신·고용 현황 및 향후 주요전략

* 경영철학, 조직문화, 인력확보방안, 교육훈련, 투명경영, 조직성과관리, 기대효과 등

* 2페이지 이내로 작성

[서식 3]

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」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

기업명 :

체크리스트(해당되는 부분에 √ 표기)

I. 신청자격 ※ 공통요건 및 선택요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

구 분		내 용	증빙파일	Y	N
공통 요건		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	-		
		「혁신성장 공동기준」에 따른 306개 품목을 취급	-		
선택 요 건	특허청 지원사업 참여	글로벌 IP 스타 기업	인증서(지정서) 혹은 선정 결과 공문		
		IP-R&D 전략지원			
		IP 제품혁신 지원 기업 (舊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)			
		IP 가치평가 지원 기업			

II. 지원제외

검 토 내 용	Y	N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파산,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,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기자본 전액 잠식 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 거절" 또는 "부적정" 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경영자 평판 (횡령, 배임 등)의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언론보도,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은 경우 		

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, 본 확인서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
2021 년 월 일

기업명 :

대표자 :

(인)

* 법인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송부

